

정 관

JUSUNG
ENGINEERING

정 관

제정	1995. 4. 13
개정	1997. 1. 04
개정	1998. 3. 28
개정	1998. 5. 13
개정	1999. 3. 20
개정	1999. 8. 03
개정	2000. 3. 24
개정	2000. 8. 01
개정	2001. 6. 28
개정	2002. 3. 15
개정	2003. 3. 21
개정	2003. 6. 27
개정	2006. 3.17
개정	2007. 3.16
개정	2008. 3.21
개정	2009. 3.13
개정	2010. 3.19
개정	2012.03.23
개정	2013.03.22
개정	2014.03.14
개정	2016.03.25
개정	2019.03.26
개정	2021.03.25
개정	2024.03.28
개정	2025.03.25
개정	2026.03.26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JUSUNG ENGINEERING CO., LTD. (약호 JUSUNG)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반도체 및 FPD 제조장비의 제조 및 판매
- ② 태양전지 제조장비 및 관련 원재료의 제조, 판매 및 증개
- ③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
- ④ 반도체 및 FPD 제조장비 관련 부품의 매매
- ⑤ 전기 전자제품 관련 부품의 매매
- ⑥ 부동산 임대업
- ⑦ 도소매업 및 증개업
- ⑧ 신재생에너지 사업
- ⑨ LED 및 OLED 제조장비의 제조 및 판매
- ⑩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당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seng.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 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는 100,000,000주 범위 내에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주식의 양도,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상법이 정한 발행한도의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이상 5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 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3(상환우선주)

- ① 회사는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상환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7조의 4 (전환우선주)

- ① 회사는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전환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7조의 5 (상환전환우선주)

- ① 회사는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과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7조의3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7조의4

제2항 내지 5항을 준용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삭제

제8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통합법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상대방 및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주주의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명예훼손을 포함한 일체의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⑪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제9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식으로 한다.
-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
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
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
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명예훼손을 포함한 일체의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
한다.)를 입힌 경우
 - 2. 회사의 파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
에 관하여는 제9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 한다.
-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주주의 주소,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1조의 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3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의 한도제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상대방 및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사채발

행시 이사회가 정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가액을 액면 미달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최저전환가액에 대하여 상법 제434조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의 한도제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 재무구조 개선, 신규 사업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상대방 및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 2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의 한도제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10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14조의 3 (교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의 한도제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6조 (소집시기)

-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께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
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 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
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
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 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28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9조 (이사의 선임)

- ① 사내이사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제 1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 2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 3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미래 산업·기술·경제흐름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선행할 수 있는 글로벌 시각과 통찰력을 가진 자
 3.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하고 협업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
 4. 기술개발·영업 및 운영·경영 중 최소 1가지 이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② 독립이사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1.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미래 산업·기술·경제흐름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선행할 수 있는 글로벌 시각과 통찰력을 가진 자
 3. 기업의 투명성, 책임 경영, 윤리적 경영, 지속가능발전 등 경영 활동에 대한 객관적 자문 능력을 갖추고 외부로부터 모범과 존경받는 자
 4. 산업, 기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독립이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1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 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별표 1 제1호 (1)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3조 (이사의 직무와 의무)

- ① 대표이사는 각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등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위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 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차상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이사의 보고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감사의 직무) 삭제

제36조 (감사의 감사록) 삭제

제37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1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장)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자 또는 차상위자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이사회 의장의 역할은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회 산하 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모든 회의에서 의안(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안건 포함)을 제안 및 제외할 수 있고, 회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 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39조의 2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경영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 보상위원회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기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등기임원 보수규정이 있을 시 해당 규정에 의해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제41조의 2 (감사)

- ①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 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제41조의 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1조의 4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 5 (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
업
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 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감사는 적법한 회계 및 업무감사결과 회사에 금전적 손해 또는 업무의 효율성
을 현저하게 저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의 6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등기임원 보수규정이 있을 시 해당 규정에 의해 정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
한다.

제41조의 8 (감사의 책임에 대한 준용규정)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제34조의 2를 준용한다.

제41조의 9 (감사위원회) 본 장의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제 39조의2(위
원회)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장 계 산

제42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 1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 2 (분기배당)

- 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의 말일 (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

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 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7조의 2의 우선주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6조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세칙내규) 이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3) (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3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3 제1항은 2001년 9월 31부터 시행한다.

- 2)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2001년 4월 1일) 당시 증권
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44조의
2 제1항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3항, 제38조 및 제43조의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3항·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29조, 제34조의2, 제3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위 정관은 당 회사에 비치된 정관과 동일함을 확인함.
2026년 3월 26일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철주